5호

하남시의회 소식지

2012.08.24.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 TEL 031)793-2363 | FAX 031) 793-2365 | www.hanamcitycouncil.go.kr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

특집 ■ 신임 오수봉 의장, "하남 발전 • 시민 복리 위해 최선"

■ 하남시의회, 합리적인 복지제도 정착 위한 연수

덕풍천에 흐르는아이들의 환호성

Contents

2 의정소식
4 의정활동
6 의원 제 · 개정 조례(안)
10 예산 · 결산
12 역사탐방
14 하남시의회 국내외 연수
16 의정뉴스

2 의정소식

후반기

의 장 오수봉

부의장 이현심

선출

신임 오수봉 의장, "하남 발전·시민 복리위해 최선" 밝혀

하남시의회는 6월26일 제6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해 제21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10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단 투표에서 오수봉 의원이 전체 의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고, 재선의 이현심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신임 오수봉 의장은 하남시 가선거구(천현, 신장1, 2, 춘궁, 감북) 의원으로 2010년 6. 2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신임 오 의장은 선출 인사말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남시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하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의장에 당선된 이현심 의원은 하남시 나선거구(덕풍1, 2, 3, 풍산, 초이) 재선 의원으로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봉사를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회 추경 2억6900만원 삭감,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포함 14건 의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20건 요구

하남시의회는 5월29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2억6900만원을 삭감, 4690억8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 총 14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1건을 포함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 조례안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 홍미라 의원 발의)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에너지 기본조례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상 오수봉 의원 발의)이다.

또한 2012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국도비 신청 및 배정내역 등 총 220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 오수봉의원 등 5인을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6월1일~20일까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분석하는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을 했다.

계획도시건설 • 공부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우리 하남시가 선진도시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제6대 하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더불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후반기 의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의회 공간은 각종 직능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간담회 등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정책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어르신, 기초수급자 등 소외된 약자를 존중하며, 항상 시민생활 현장을 찾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계획적인 지역개발로 잘사는 하남건설」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하남시에는 자족시설 등 생산시설과 물류유통 관련시설 사업 및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우리 하남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하여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활기차고 잘 사는 도시로 발전 될 수 있도록 市 집행부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견제와 협력으로 조화로운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 문화, 체육분야 등 시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市 집행부가 제반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견제하는 한편, 협력을 통해 시민이 중심되고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하남시를 만들어 가기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의회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언을 구하고, 앞선 도시의 새롭고 우수한 제도를 받아들여 시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는 일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분들과 함께 손잡고, 시민이 행복한 청정하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후반기 의정운영 방향에 대한 실천결과에 대하여 2년 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의장

“ 보금자리사업 하남업체 참여 확대하라 ”

하남시의회, LH에 지역 자재구매 · 주민 우선고용 촉구 요청

LH가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내 미사지구를 비롯 향후 추진하게 될 감일 · 감북지구 보금자리사업과 관련, 하남시의회(의장 오수봉)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와 인력 수급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의회가 보금자리 사업의 주역인 LH에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각종 보금자리사업에 편승,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홀대를 받는 등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7월16일 오수봉 의장을 포함 7명 전원 의원 명의로 LH에 ‘관내 보금자리 사업장 지역주민 및 업체 참여 확대 요청서’를 타전하고 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LH의 적극적인 지역배려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요청서에서 “4개 보금자리 사업으로 시 전역이 대단위 공사장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나 주민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요청서를 보낸 이유를 밝혔다.

또 “수용지구 주민들은 개인재산의 저평가 보상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활터전을 잃고 떠나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해 수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철거와 이주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음 · 미세먼지 · 교통 불편 등 생활환경과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LH공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를 감안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시에의 정책적인 배려와 주민 의견을 제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생산 · 판매 자재를 구매하고 주민 우선 고용에 노력하도록 권장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조례의 권고사항과 주민 정서 및 피해가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해 우리시 관내에서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역주민 고용 및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내 보금자리 사업장 지역주민 및 업체 참여 확대 요청서

먼저, 귀 공사에서 우리시 미사 · 감일 · 감북지구 보금자리 및 위례신도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市가 새롭게 변모되고, 서민주택 공급을 통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어 하남시와 공사 모두 발전하고 국가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사도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이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유 · 무형 이익이 창출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4개 보금자리 사업으로 시 전역이 대단위 공사장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나 주민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 수용지구 주민들은 개인재산의 저평가 보상으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생활 터전을 잃고 떠나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수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철거 · 이주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음 · 미세먼지 · 교통 불편 등 생활환경과 지역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LH공사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시에의 정책적인 배려와 주민 의견을 제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지역 업체의 참여와 생산 · 판매 자재를 구매하고 주민 우선 고용에 노력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조례의 권고사항과 주민 정서 및 피해가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우리시 관내에서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역주민 고용및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2. 7.

하남시의회 의 장 오수봉
하남시의회 부의장 이현심
하남시의회 의 원 윤재군
하남시의회 의 원 홍미라
하남시의회 의 원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 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 원 황숙희

4 의정활동

하남시의회, 열원시설 풍산동 입지 반대 성명

하남시의회가 5월11일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열원공급시설의 풍산동 입지와 관련, 반대 성명서를 전체의원 명의로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하남시의회는 최근 LH가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미사지구에 공급할 열원시설인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 열원공급시설'을 당초 지구북쪽(선동)에서 지구남쪽(풍산동)으로 변경하려 함에 따라 당초 계획인 선동 지역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미사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미사지구에 공급할 열원시설은 강동열병합발전소 증설과 선동에 약 2만㎡의 보조열원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강동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대한 강동구의 반대 입장과 미사지구 에너지 시설 집적화 사유를 들어 기존시가지와 인접한 풍산동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동시에 규모 또한 4만5000㎡로 증설하려 함에 따라 시의회가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열원공급시설 입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집단 반발과 지역 · 주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책임은 모두 LH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원안대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열원공급시설 풍산동 입지 반대

우리 15만 하남시민과 하남시의회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 열원공급시설' 입지를 당초 계획했던 지구북쪽(선동)에서 지구남쪽(풍산동)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선동에 설치할 것을 LH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사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미사지구에 공급할 열원시설은 강동열병합발전소 증설과 선동 약 2만㎡의 보조열원장만 설치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강동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대한 강동구의 반대 입장과 미사지구 에너지시설 집적화 사유를 들어 하남 기존시가지와 인접한 풍산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규모도 약 4만5000㎡로 확대하여 설치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15만 하남시민과 하남시의회는 LH에 큰 실망을 하는 바이다.

또한 금번 LH의 미사지구 열원공급시설 입지 변경 추진은 대단위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LH가 기본적인 도시 필요시설 입지를 정함에 있어 비용 부담과 편익 수혜의 공평성을 훼손하게 되고, 주먹구구식 입지 선정과 변경에 따른 시설규모 증가로 낭비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은 물론 LH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효율적 행위임이 자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열원공급시설 입지 변경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주민 집단 반발과 지역 · 주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책임은 모두 LH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열원공급시설을 원안대로 선동에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 5. 11.

하남시의회의원 일동

2012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하남시의회는 6월8일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열고 2012년 1차 정례회에서 열리게 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문과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시의회 7명의 의원과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발언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지출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시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추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2015년 인구 35만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복지, 환경, 도시개발시설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시설견학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등 10여 건의 의견이 나왔다.

홍미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은 법률, 세무, 교육, 도시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자문위원의 조언과 전문지식은 의회를 비롯, 시의원 개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한 단계 높여 주었으며, 앞으로도 하남시와 의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이후 18명의 위원을 4월에 위촉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 수집,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오수봉 의장, 대형마트 강제휴무 관련 간담회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 개정 추진

오수봉 의원은 3월7일 이마트 지점장, 홈플러스 지점장 신장 · 덕풍시장 연합회장, 소비자 지킴터, 소비자교육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 오수봉 의원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두째, 네째 일요일 의무휴일 지정 등을 소개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남시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2개와 준대규모 점포 3개가 영업하면서 덕풍 · 신장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은 현재 202개의 점포에 305명이 자영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로 2002년 7월 GS슈퍼 하남점의 개설 당시 70여m 거리에 있는 신장시장은 월 매출 최대 30%의 감소로 큰 타격을 받기도 했으나 전통시장의 이점을 살린 시장의 노력과 이용시민들의 관심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을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2008년 5월 이마트, 2010년 1월 GS슈퍼 덕풍점, 2010년 12월 홈플러스, 2011년 1월 롯데슈퍼의 개설로 인해 두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의무휴일에는 두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소비자인 시민과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면서 "장을 보는 연령대가 젊어진 만큼 재래시장도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신장시장 상인연합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하남시 수산물 상인조합, 회타운 부지 이전 관련

하남시의회는 5월8일 오후2시부터 의회 2층 세미나실에서 신장시장 상인연합회장 등 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상인연합회의 요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신장시장 상인연합회는 조례 개정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열린 하남시 수산물 상인조합과의 간담회에서는 상인조합 임원 5명과 하남시 개발사업단장과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해 미사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개발과 관련 현재 망월동에서 성업 중인 회타운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이 오고갔다.

간담회를 마친 홍미라 의장은 "향후에도 조례 개정 등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나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오늘 같은 간담회나 현장에서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6 의원 제·개정 조례(안)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홍미라**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지난 12월 18일 초이동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였는바, 불의의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과 별도로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이 조례에 의한 재난피해 지원은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재로 주택 전부를 상실한 자.
2. 화재로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

제5조(지원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② 화재 피해 정리에 따른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화재로 주택 또는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임시 주거시설 등의 지원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 중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단체나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원)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성금모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황숙희**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된「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9일 이내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제2항 중 “정기회 회기중 7일의 범위”을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출석, 증언이나”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을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으로, “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오수봉** 의원

이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이 2012. 4. 10일자로 개정되어 2012. 5.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가 무의미하고 적용시점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일부 강행조문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하남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하남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 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홍미라** 의원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점포임대료가 너무 높아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의원 제·개정 조례(안)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오수봉**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며 또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실천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하남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하남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하남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협력) ①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 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의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사용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방미숙** 의원

조례 제정 이유는 현행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보호 · 지원하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건의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하남시 박물관 · 미술관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남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하남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추경예산(안) 심의 이렇게 했습니다.

제2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용)를 구성,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1차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지난 5월 21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4,693억 5,132만 2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4,693억 5,132만 2천원 중 문화체육과 2억 15백만원(체육동호회 사무실 설치공사) 환경보호과 5천 400만원(국제연대활동비 △ 6,000천원, 환경체험센터 48,0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2억 6,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1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

2011 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

지난 6. 1일부터 20일까지 2011회계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는 오수봉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이철규 공인회계사와 안종열(서부농협) 이종범(하남농협) 이두한(전 금융기관 근무) 위원이 참여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석

○ 일반회계 수납액은 382,570,305,350원, 세입예산현액은 367,601,039,51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104.1%를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24,183,429,200원으로 2010년 24,888,751,120원 보다 705,321,920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2,693,664,150원 대비 1,237,382,210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미수납액은 24,183,429,200원으로 지방세 수입 15,230,688,790원과 세외수입 8,952,740,410원이 차지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석

○ 세출결산액은 256,513,088,200원으로 예산현액 367,601,039,510원 대비 70%가 집행됐고, 88,392,700,09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10년 26,026,882,840원에서22,695, 251,220원으로 3,331,631,620원이 감소하였다.

○ 예산이용 · 전용 · 이체현황은 △예산이용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예산전용으로 「디지털 영상홍보시스템 구축」 등 9건 73,512,000원을 예산과목 착오 편성에 따른 사유로 관계규정에 따라 전용한 사실이 있었다. 또 예산이체로 46건 4,259,816,000원을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체한 사실이 있다.

○ 2011년 이월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명시이월이 17건 12,497,117,540원으로 2010년 대비 2,714,270,84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건 362,645,300원으로 2010년 대비 1,072,072,57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비이월은 30건 75,532,937,250원으로 2010년 대비 39,617,440,310원이 증가하였다.

○ 예비비 사용에 있어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93,260,000원으로서 한강둔치 관리공사 사업 외 6건 597,936,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분석

○ 2011년도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07,581,495,810원에 대하여 104,419,781,090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7.1%, 징수결정액 대비 90.3%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 11,279,377,640원중 결손처분액은 112,477,090원이며, 나머지11,166,900,55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다.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671,430,9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 징수결정액 대비 88.1%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 11,125,903,220원중 결손처분액은 112,477,090원이며, 11,013,426,13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다.

201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석

○ 기타특별회계(공기업회계 포함)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65%인 70,385,710,950원이며, 집행잔액이 25,167,039,450원으로 확인하였다.

○ 이월액 12,028,745,410원으로 2010년 대비 5,545,712,600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검사결과

○ 2011년 채권 결산결과 2010년말보다 59,617,740원이 증가한 4,825,687,810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말보다 543,704,000원이 감소한 3,119,137,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말보다 156,280,680원이 감소한 225,703,900원으로 확인되었다. 기금의 경우 2010년말보다 759,602,420원이 증가한 1,480,276,910원이다.

채무 검사결과

○ 2011년 말 총 채무규모는 25,2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전년대비 증감액을 검토한 결과 5,900,000,000원이 감소되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 하남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2011 세입 · 세출결산서)를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 5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신뢰 · 소통 · 화합하는 하남」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신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통하여 발견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

1. 회계는 정확하고 엄정한 집행이 기본이며, 모든 회계관련 서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과 관행에 의한 회계처리 등으로 제반서류의 미비점이 다소 발견되었음. 향후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에 의거 사업의 실효성 및 우선순위를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낭비성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바 조기 집행대상 사업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고 특히, 조기집행 사업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3. 기금은 어떤 목적이나 사업의 기본 또는 기초가 되는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 바 기금관리에 있어 각 기금별로 예산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 및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자금 관리에 내실을 기 하도록 해야 하며, 각 부서별 기금 관리를 지방재정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 기장 방법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4.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결손처분하였으나, 소멸시효 도래전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나 충실한 징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대여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또는 무재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5.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696,46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6,214,260천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징수결정의 타당성, 합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체납징수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함.

6.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2011년 건물증가액이 2건(627.41㎡) 1,898,414,420원임에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2건(32,641.05㎡) 1,407,776,3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세권이 25,000천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전세권의 증가금액이 반영되지 않음. 토지 및 건물현황에 대하여 공부와 대조 확인하여 오류를 수정하시기 바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 총 9건(완료 7건, 추진중 2건) –

공무원 여비 정산처리 미흡
집행잔액(불용액) 과다 발생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과다 및 체납자 관리 소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 철저
기금의 비효율적 자금 관리와 회계장부 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 소홀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대책 강구
사무간소화 방안 마련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편성 부적정

하남 역사의 중심 '이성산성'

한성백제 일까, 통일신라 일까...학자들간 논란

하남시 이성산성(사적 제422호)은 춘궁동 산 36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총 둘레는 1,665m이고 내부의 면적은 약 128,890㎡로서 약 4만7천여평 정도이며 해발 209.8m에 자리 잡고 있다.

성벽의 높이는 3~7m 가량으로 삼국시대 산성중에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숭산인 검단산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에는 남한산, 서쪽과 북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 북쪽의 적을 방어하기에는 천혜의 요새다.

산성의 축조 시기나 축성의 목적을 알려주는 문헌자료가 없어 이성산성은 아직도 논란 속에 감춰져 있다.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과 중정남한지를 쓴 홍경모, 대동지지를 쓴 김정호는 모두 백제의 성이 하남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까지 하남에 백제의 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일제시대의 사학자인 금서룡(今西龍)은 춘궁리 일대를 백제의 도읍지로 보고 이성산성을 『삼국사기』개로왕조의 북성(北城)으로, 남한산성을 남성(南城)으로 보았다.

금서용(今西龍), 조선고적조사보고(朝鮮古蹟調査報告), 대정오년(大正五年) 이병도는 백제 한성시대의 도읍지가 위례성에서 하남위례성(한성)으로 천도해 간 것으로 보고 위례성을 세검동 일대로, 하남위례성을 춘궁동 일대로 보았으며, 잠시 천도하는 한산을 남한산 일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성 내부시설로는 저수지 3기와 건물지 10기, 문지, 배수구 등의 부대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토기, 목제인물상,목간,자,요고,빗,팽이등과 용척(건물을 질 때 사용하는 자)두개(고구려척 35.6cm, 당척은 29.8cm, 고한척26.7cm), 철촉,청동방울,따비,쇠스랑,도끼등이 발굴되었으며, 석제는 반달칼,간돌칼, 석촉,돌거울,활석,숫돌,어망추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발굴된 유물의 상당수가 신라가 한산주를 설치한 이후의 것들 이라고 발굴기관은 추정하고 있어 이성산성의 축성 년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채 그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다.

이성산성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체로 굽이 낮은 고배류와 항아리, 인화문토기 등 신라 토기와 경질의 기와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수십여 점의 벼루가 출토되어 당시의 문화생활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하는데, 목간(木簡)중에는 "남한성(南漢城)"이라는 성의 명칭이 확인되어 이성산성이 남한성 또는 한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저수지 내에서는 철제 도끼와 쇠스랑, 짚신, 나무자 목척[木尺], 목제 인형, 바구니, 팽이, 동물 뼈를 갈아 만든 빗치개 등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각종 유물이 출토된 저수지가 이성산성에는 2곳이 존재한다. 1차 저수지와 2차 저수지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식량이다. 저수지가 없는 성에서는 식수뿐만 아니라 군마나 가축, 취사, 세면, 세탁 등에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단 며칠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다.

1차 저수지는 산성의 축조와 동시에 형성된 것으로 형태는 타원형이고 크기는 대략 54×30m이며 2차 저수지는 장방형이고, 크기는 18×27m 이며 깊이는 230cm 내외이다.

하지만 삼국시대 산성안에 2개의 저수지가 축조된 산성이 드문 점과 단군문화기행이라는 책자에는 하늘과 관계된 제사에는 필히 연못이나 저수지가 있고

신성한 나무인 침엽수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어 일본 내에도 태백산이 있다고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수지와 신앙유적과의 관계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성내에는 평면적이 80평이 넘는 대형 장방형 건물을 4개소를 포함해 8각, 9각, 12각 건물지 등 2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지가 발견됐다. 그 중 동서로 대칭을 이루는 9각 건물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天壇)으로, 8각 건물은 토지신에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으로 추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산성 안에 축조되는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창고, 병영, 장대 등 전투에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성산성은 이 외에도 행정적, 의례적인 요소의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성산성의 기능이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정 및 제례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성산성에서 있는 건물지 중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 11개소이며, 주춧돌이 일부 노출되었거나 건물지가 확실한 것을 포함하면 최소한 20개소 이상의 대형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8각 건물지는 일본 구마모토 현 소재 기쿠치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쿠치성은 7세기 후반에 야마토 조정이 쌓은 산성으로 이성산성의 8각 건물지와 흡사한 건물을 복원해 놓았다.

기쿠치성의 8각 건물지는 백제인이 직접 건축했거나 건축 감독을 했을 것으로 일본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한 기쿠치성 내에 있는 저수지에서는 백제계 청동보살입상이 발굴되기도 했다.

이렇듯 하남의 이성산성과 일본의 기쿠치성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성산성을 통일신라시대에 축성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성성산성을 백제시대로 보고 있어 일본의 사학자와 국내 사학자간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성산성의 축성연도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의미는 하남의 정체성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기록에서 본 듯이 이성산성의 존재가치가 어떤 것인지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밝혀내고 정체성을 찾는데 혼 심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복지제도 정착 연수

하 남 시 의 회

하남시의회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방안과 합리적인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4월17일 국외연수를 떠났다.

2012년 초부터 추진한 연수계획은 2개팀으로 구성해 제1팀은 호주, 뉴질랜드의 캔터베리시의회를 비롯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탁아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공식방문해 시설관계자 및 이용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호주의 복지시스템은 개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 접목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는 실질적인 연수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지원관계, 시설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3월12일 각국 기관에 50여 가지의 사전 질문을 공문서를 통해 발송했다.

제2팀이 방문하는 베트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추세와 다문화가정 구성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인들의 의견수렴과 문화 경험을 통해 구성원들이 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수는 급증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하남시의회는 연수와 관련, 호주 국외연수팀의 연수보고회를 5월1일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하남시의회 국외연수 귀국보고회 개최

합리적인 복지제도 정착과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하남시의회 국외연수단은 5월1일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국외연수 귀국보고회를 가졌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귀국보고회에서 홍미라 의장은 “선진국의 복지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정착된 것이 아니며, 오래 기간 다듬어져 그 문화에 맞게 발전된 것임을 강조하며, 좋은 제도를 우리 하남시의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시켜 나갈 것”이라고 연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베트남 연수팀 대표 보고를 마친 김승용 의원은 “베트남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결정된 신부들에게 한국에 대한 기초교육과 문화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한국 남성들도 베트남에 대한 기초교육과 문화교육을 받아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다문화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보고회를 마쳤다.

하남시의회는 4월17일~23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4월19일~26일 베트남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초부터 계획한 것으로 2개팀이 각각 호주, 뉴질랜드와 베트남을 방문했다.

호주, 뉴질랜드 연수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시설에 대한 지원책 등에 주안점을 뒀으며, 베트남 연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추세와 다문화가정 구성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의해 성장하는 신도시개발에 중점을 뒀다.

하남시의회 베트남 연수

하남시의회 호주뉴질랜드 연수

하남시의회 연수단 제1팀은 호주, 뉴질랜드의 캔터베리시의회를 비롯 탁아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공식방문해 시설관계자 및 이용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하남시의회 연수단 제2팀은 베트남의 신도시 빈증성을 방문해 부지사 면담을 가졌고, 미푹공단을 시찰했다. 호치민 총영사관, ACEF 호치민 한국문화원, 호치민 한인회, 다문화 가정 등 폭넓은 연수를 실시했다.

하남시의회 2012년 1차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실시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진행 실무 기법 | 독도 침탈 일본 규탄 결의문 이어 독도 사랑

하남시의회는 5월14일~17일 3박4일 일정으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의정 기법에 대해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틈만 나면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2008년 7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에 이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독도사랑의 결의를 다졌다.

의정연수는 강원도의회 의사관을 강사로 초빙, 지방의회 기능의 한 가지인 조례 제정(자치입법) 분야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실무기법과 실제사례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3C비전스쿨을 통한 소양강좌를 실시했다. 홍미라 하남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던 독도에 대한 사랑을 이번 방문을 통해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6회 하남시의회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성황

6월17일 제6회 하남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가 하남시 종합운동장에서 여성축구팀 7개팀 1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의장기 여성축구대회는 여성 축구선수단 입장식, 방미숙 부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홍미라 의장의 대회사, 그리고 이교범 하남시장의 치사 등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총 7개 여성축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홍미라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여성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증대, 그리고 여성축구가족 간의 상호화합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가 축구를 즐기는 축구인들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축구대회를 통해 여성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천현축구회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며 2연승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2위는 동부F · C, 공동3위는 덕풍축구회와 한울축구회에서 차지했다.

오수봉 의원,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 맡아

하남시는 6월1일~20일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했다.

결산 검사위원은 오수봉 의원, 이철규 공인회계사, 이종범 하남농협 상무, 안종열 서부농협 신용상무, 이두한 전 우리은행 지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원들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기금, 채권 ·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표위원을 맡은 오수봉 의원은 199회 임시회, 202회 정례회, 209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213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중책을 맡았다.

신문기사보도

민원접수안내

접수처 : 우)465-701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의회 전화 : 031)793-2363

발행인 : 오수봉 편집인 : 최병만 발행처 : 하남시의회

-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제출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민원내용에는 민원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하남시)사무의 범위 내의 것이라야 함